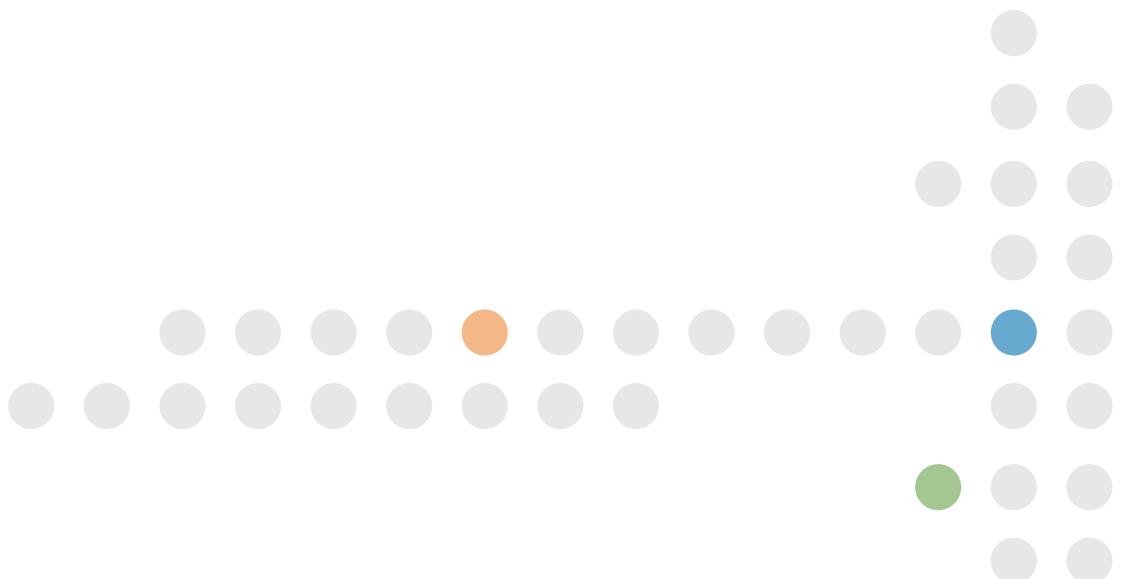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26 위원회 업무계획





목 차

I. 인권환경과 업무추진 방향 1

1. 인권환경 3
2. 업무추진 방향 4

II. 전략목표별 업무추진 계획 7

전략목표 I. 기본적 인권 보장 강화 10

①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11
② 사회권 보장 강화 14
③ 차별과 혐오에 대한 체계적 대응 16

전략목표 II. 변화하는 인권의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18

① 디지털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19
② 기후위기와 인권 21
③ 기업의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23
④ 초고령사회 노인 권리보장 및 돌봄공공성 강화 27
⑤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 30
⑥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및 피해자 권리 강화 33
⑦ 수사제도 개편과 인권보호 34

전략목표 III.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존중받는 삶 실현	35
①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기반 조성	36
②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사회참여 증진	38
③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강화	40
④ 이주민·난민에 대한 인권보장	43
⑤ 군인 등의 인권보호·증진 강화	45
⑥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인권 실현	50
⑦ 인권존중 스포츠 환경 조성	52
전략목표 IV. 인권보장체계 구축 및 인권 거버넌스 강화	54
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및 국제적 협력 강화	55
②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인권의 지역화	60
③ 인권위 책임성·독립성 강화 및 역량 제고	63
④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및 조정 활성화	65
⑤ 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권고 이행 체계 강화	69
⑥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가치 확산	71
⑦ 다양한 인권옹호자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79
■ 주요 일반과제 사업	81

I . 인권환경과 업무추진 방향

I . 인권환경과 업무추진 방향

1. 인권환경

- 비상계엄 선포(2024.12.3.)에서 국회 탄핵소추 가결(2024.12.14.), 현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2025.4.4.), 조기 대선(2025.6.3.)의 과정은 국민의 헌법과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인권 관련 요구들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개헌과 사회개혁 과제 논의로 이어지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신기술, 기업과 인권, 노인인권 등 인권의제가 전세계적 과제로 부각되고,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점차 구체적인 쟁점이 도출되고 법제화·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양극화, 불평등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가 남아 있고, 사회권 강화 움직임 속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개선을 비롯하여 돌봄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의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임
- 국제인권기준을 국내 입법·사법·행정과 접목하여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인권기구 역할 제고 필요
- 인권위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부응하는 인권위의 독립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인권위 역량 강화 필요

2. 업무추진 방향

□ 인권의 개념 확대 및 인권보장체계 제도화

- 새로운 시대 준비, 새로운 기본권 추가와 사회권 강화 등을 포함한 기본권 규정의 체계화,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의무의 현실화 등 기본권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새정부 임기 내에 개헌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보편적 인권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및 인권조례 등 국내 인권보장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인권의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고용,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AI는 일자리 대체와 안전문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차별적 대우, 디지털 성폭력, 보이스피싱,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위협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 차별 금지 등 인권 증진, 국가 행정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정보주체의 권리 옹호를 위한 정보인권 의제 발굴 등 AI가 주는 편의과 동시에 부작용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필요
- 유럽을 중심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제도화(인권실사, 인권환경공시 등)가 진전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전세계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국제인권 기준과 제도화가 진행되는 해외 법규에 대비해야 하므로,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서 인권경영 확산 및 제도화 방안 마련 필요

- 인권이사회가 노인권리협약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개방형 정부간 워킹 그룹(OEIGWG)을 구성하여 2026년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는 등 노인 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 확산에 대응 필요
-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 매년 채택되고 있는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필요

□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인권취약분야 인권개선 강화

- 소득 상·하위간 격차가 확대되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38.2%(통계청, 2024.8.)를 차지하는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나친 학벌·학력주의는 계층간 교육 격차, 사회적 기회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어 교육 기회의 동등한 부여,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논의 필요
- 우리나라는 저출생·초고령사회 및 다인종·다문화국가로 진입하였으며,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는 0.7로 146개국 중 94위를 기록(세계 경제포럼, 2024)하고, 청년 세대는 자살, 정신건강 악화, 고립, 주거불안, 고용불안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고 있어 인권취약 계층을 위한 세밀한 인권보호망 확충이 요구됨
- 많은 국가에서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지역사회 등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돌봄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안정화와 군인권보호 체계의 확립을 바탕으로 군인 등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구금보호시설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아울러, 스포츠 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 인권강화를 통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제도화

- 유엔 인권제도 이행을 위한 국가 메커니즘(NMIRF)의 설립과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총회(A/68/268), 인권이사회(A/HRC/30/25 등)에서 채택된 많은 결의안에서 권고의 형태로 포함
- 그럼에도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권고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바, 반복해서 제기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유엔 권고 사항의 이행에 관한 검토 필요

□ 인권위의 역할 제고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도입(2022)되고, 국가인권교육원이 신설(2025)되는 등 인권위 기능이 강화되면서 제5차 인권NAP(2028~2032) 권고 및 인권위 설립 30년(2031)을 내다본 인권위 역할 제고를 위한 면밀한 대응 요구
- 인권사무소 개소 20년(2025)을 매개로 인권조례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인권보장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인권 신장을 위한 보다 긴밀한 역할 수행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직 수행(2016~2026) 및 UN 개방형 정부간 실무그룹 참여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나, 인권위의 독립성, 역할 등에 대한 우려가 개진되고 있어 인권위 역할 정립과 협력의 필요성 증대

□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에 기초한 연도별 업무계획 이행 실적 및 업무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전략목표·성과목표 체계의 정비 필요성 점검

II. 전략목표별 업무추진 계획

II. 전략목표별 업무추진 계획

전략목표 1

기본적 인권 보장 강화

전략목표 2

변화하는 인권의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목표 3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존중받는 삶 실현

전략목표 4

인권보장체계 구축 및 인권 거버넌스 강화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1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호 등 자유권 보장2. 집회와 시위 관련 제도개선3. 자유권 분야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2	사회권 보장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빈곤·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확대2. 사회권 분야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3	차별과 혐오에 대한 체계적 대응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혐오표현 대응2.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대응

①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호 등 자유권 보장 [인권정책과]

○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기본적 권리 보장방안 검토

- 수사,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이 남용될 우려가 가장 큰 분야로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 여부, 국제인권규범과의 정합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 권리 보장 수준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 참여 증진, 상소 제도 개편, 사법개혁안 논의 등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칠 영향 등의 정책을 검토하여 수사 및 재판의 당사자인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동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검토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견해와 가치 형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작동함
-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공론장의 생성·접근·참여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자유로운 토론 공간 및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한편 무분별한 가짜뉴스, 혐오표현 확산으로 인한 규제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표현의 자유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논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의제 발굴 필요

2. 집회와 시위 관련 제도개선 [조사총괄과]

○ 집회와 시위 관련 제도개선

- 집회와 시위 관련 각종 법령 개정안 및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 및 검토를 통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호

○ 집회 등 인권현안 모니터링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

- 인권침해 상황이 우려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언론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현장 대응
- 집회 현장 및 언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업무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 와의 소통 강화

3. 자유권 분야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인권정책과]

○ 강제실종방지위원회 심의 대응

- 대한민국 정부는 2022. 12.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가결하고, 2023. 2. 국내에 협약 가입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최초 국가 보고서를 유엔에 2025. 5. 23. 제출
- 강제실종방지위원회에서의 쟁점목록 채택 관련 위원회 의견서 제출 및 독립보고서 작성 등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필요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권고의 국내 이행 견인

-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검토하고, 정부가 그 권고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여 독려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견인

참고**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표명(2023),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3),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형집행법령 개정 방안 권고(2024),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4), 피해자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2025)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방향 검토
- 유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제출(2024),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2025),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25),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5) 등 자유권 분야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한 의견 제시

참고**후속과제**

- (2027~203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 지속 검토
- (2027~2030)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차 심의 대응 및 최종견해 권고의 국내이행 추진,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구제 법률 제정 관련 모니터링 지속
- (2027~2030) 고문방지협약 최종견해 검토 및 고문방지위원회 권고의 국내이행 추진

② 사회권 보장 강화

1. 빈곤·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확대 [사회인권과]

○ 빈곤층 대상 자활근로사업 정책 모니터링 및 현안 대응

- 자활근로사업의 급여 수준과 자활기업의 개소수가 감소하고, 사업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활근로사업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2014년 실태조사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기준증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격차 등 비수급 빈곤층 발생원인 및 비수급 빈곤층의 현 시점 기준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 모색 필요

2. 사회권 분야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사회인권과]

○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24. 10.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 채택
-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5차 심의를 위한 위원회 독립의견서 제출 및 심의 대응 필요

○ 사회권 침해 개인구제절차 강화를 위한 현안 대응

-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사회권 침해에 대해 위원회 진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 권고
- 사회권 침해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 필요성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한 현안을 대응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참고**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 체계 강화를 위하여 노숙인 의료접근권 보장 권고(2022),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 권고·의견표명(2022),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표명 등을 통한 의료 사회권 보장 강화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법제화 등 권고(2023)로 청년층의 소외 등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문제 의제화
- 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 권고(2024)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실질화
-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5차 심의 대응(2023~2025) 및 사회권 개인구제절차 강화 방안 공론화 등 국제인권제도의 국내 이행방안 모색

참고**후속과제**

- 양극화 해소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등을 통한 사회권 개인구제절차 강화

③ 차별과 혐오에 대한 체계적 대응

1. 혐오표현 대응 [혐오표현대응과]

○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현안 대응, 정책 역량 강화

- 혐오표현 방지 제도화를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추진
-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현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선 방안 모색
- 혐오표현 정책 토론회·간담회 개최를 통해 혐오표현 대응 정책 마련 공론화 촉진

○ 혐오표현 대응 역량 강화

- 혐오표현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정부 부처별, 주제별 등), 혐오차별대응포럼(시민사회 협력체계) 운영 등 정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혐오표현 대응 역량 강화
- 혐오표현 인식 개선과 실효적 대응을 위한 인권교육 및 관련 자료(안내서 등) 보급 확산

2.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대응 [혐오표현대응과, 차별시정총괄과]

○ 차별금지법 공론화 촉진 및 입법 논의 지원 (혐오표현대응과)

- 국회의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 지원
- 평등법 관련 다양한 견해 모니터링, 쟁점 정리 및 공개적 논의 지원 등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론화 촉진

○ 차별 관련 주요 해외 결정례 번역 (차별시정총괄과)

- 유럽인권재판소 등 인권 전문 사법기구의 주요 판례를 선별·번역하여 진정 사건 조사 및 판단 기준 수립 등에 활용
-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한 해외 사법기구의 판단 기준과 접근 방식 등을 파악 함으로써 국내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도출

○ 차별금지법 관련 실태조사 추진 (혐오표현대응과)

-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타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 시행이 가져오는 법률적·정책적·사회적 효과(영향)와 시사점 분석
- 국내 차별금지법 제정 방향과 과제 제시를 위한 토대 마련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실시(2021)
- 인종·혐오차별 대응 주한대사 간담회 개최(2021)
- 평등법 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2)
- 평등법 입법 토론회 개최(2023)
- 세계열린정부주간,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 세션 운영(2024)
- 혐오표현 대항 안내서 <모두의 존엄을 위한 평등 실천> 발간(2024)
-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 개최(2025)
- 해외 중앙정부의 혐오표현 대응 사례집 발간(2025)
-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발간(2025)

참고 후속과제

- 국회의 차별금지법 논의 촉진을 위한 공론화 지원 및 현황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국정과제(혐오·차별 방지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 추진

전략목표 II

변화하는 인권의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1	디지털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1. AI·디지털 시대 정보인권 보호
2	기후위기와 인권	1. 기후위기 대응 취약계층 등 인권 보호
3	기업의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1. 민간분야 인권경영 견인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2. 공공분야 인권경영 확산 및 내재화 3. 인권경영 공감대 확산 및 국내외 협력 강화
4	초고령사회 노인 권리보장 및 돌봄 공공성 강화	1. 초고령사회 노인인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 2. 노인인권 인식개선 및 협력 강화
5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2. 북한인권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및 네트워크 조성
6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및 피해자 권리 강화	1.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보호
7	수사제도 개편과 인권보호	1. 수사제도 개편의 인권영향 분석 및 대응

① 디지털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1. AI·디지털 시대 정보인권 보호 [인권정책과]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권보호 방안 검토(AI에 의한 인권침해 점검체계 구축 등)

-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공공·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또한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제·개정을 적극 추진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과도한 감시와 차별 등 위험을 파악·예방하기 위해 인권침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개선으로 연결되는 점검·감독 구조를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권보호 중심의 기술 거버넌스 확립 필요

○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검토

-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담긴 추상적 규정과 원칙,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해석·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법이 의도한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성 확보의 실질적 달성을 중점을 두어야 함
- 인간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보장 관점에서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고시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정보인권 현안 대응 및 국내외 전문가 교류·협력

-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기술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정보 인권 침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인권 현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외 학계·연구기관·민간전문가와의 지식공유·정책협력 기반 강화
- 글로벌 정보인권 최신 기준·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2022),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도구 적용에 대한 의견표명(2024) 등 AI·디지털 시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 발굴 및 개선방향 검토
- 「데이터기본법안」에 대한 의견표명(202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3),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20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5) 등 정보인권 관련 제·개정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참고 후속과제

- (2027~2030) AI와 빅데이터 활용 시 정보인권 보호 강화
- (2027~2030) 금융 분야, 보건 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 공유와 활용에 대한 기준 재검토 및 보완
- (2027~2030) CCTV, 위치추적 등 신기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② 기후위기와 인권

1. 기후위기 대응 취약계층 등 인권 보호 [사회인권과]

○ 기후위기 적응 정책 관련 인권 보호 및 증진

-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기후 적응 정책을 검토하고,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환경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
- 기후위기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 특히 농민 등 자연환경에 의해 소득과 작업환경이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 기후위기 감축 정책 관련 인권 보호 및 증진

-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 검토
-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장기간 축적되므로, 현재 세대의 배출이 미래 세대에게 되돌릴 수 없는 부담으로 전가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현재의 감축 정책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마련

○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분야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실태조사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JTWP)' 수립이 합의되었고,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의 3대 정책방향 중 하나로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제시
- '기후위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노동자의 규모·유형 등을 살피고, 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및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방안 검토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기후위기와 인권 의견표명(2022),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4),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개선 권고(2025) 등을 통해 기후 위기가 인권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에 기여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에 대한 권고(2025),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2025) 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위기 대응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
- 기후위기 대응과 인권 보호의 국제법적 의무와 책임 국제토론회(2025)를 개최하여 기후위기의 국제법적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방안 논의

참고 후속과제

-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계층(노인, 아동, 빈곤층, 농어민, 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마련
- 온실가스 장기감축경로와 관련 미래세대 인권의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검토

③ 기업의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1. 민간분야 인권경영 견인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사회인권파]

○ 민간기업 인권경영 관련 국내 정책·제도 점검

- 기업의 인권경영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 인권경영 정책의 통합 및 내재화, 인권경영 거버넌스 강화, 기업의 고충처리제도 활성화 등에 대해 점검하고자 함
- 주요 10대 기업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 중인 ESG 의사결정 체계에서 인권 관련 이슈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다뤄지는지, 인권경영/ESG 경영 의사결정 체계가 사내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인권경영에 대한 별도의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한지, 고충처리절차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외부 이해관계자가 접근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기업 해외 진출 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 점검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은 우리 기업의 공급망이 해외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별 인권 취약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인권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 및 재무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함
- 해외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는 산업을 정하여,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 정책 및 컨설팅에 있어 인권을 고려하도록 하는지, 기업 자체적으로 해외 진출 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인권실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 필요

○ 기업의 전환 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 점검

- 기업의 AI 활용 확대로 업무 자동화, 알고리즘 기반 업무 재편, 외주화 등이 확산되며 노동의 형태가 재구성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탄소 다배출 업종의 에너지 전환, 발전소 및 대규모 전력수요시설(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의 확대에 따른 입지·이전, 지역사회의 환경 부담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AI·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수행해야 할 인권·환경 실사 체계가 AI 활용으로 인한 인력 감축, 공급망 재편 문제, 입지 전환에 따른 지역 주민 수용성 등과 같은 인권·환경 리스크를 제대로 식별·예방·완화·구제 하는지를 점검하고, 정의로운 전환(Justice Transition)의 원칙이 실사 절차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기업의 인권·환경 국제 규제 대응방안 점검 및 제도개선

- 유럽의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도입과 함께, 우리 기업은 수출 과정에서 배출 관련 비용과 정보 요구에 직면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배출권 거래, 탄소세 관련 논의가 이어지며 기업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짐
- 주요 산업과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배출 관리와 공시 관행, 비용 대응 역량을 폭넓게 점검하고, 최근 EU나 미국에서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감안한 ESG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서, CBAM 등 인권·환경 국제 규제의 요구에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 모색 필요

2. 공공분야 인권경영 확산 및 내재화 [사회인권파]

○ 공공조달에서의 인권 고려를 위한 제도개선

- 공공조달 관련 법제는 환경, 인권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조달절차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조달 과정상 인권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거나 예방·완화하는 조치 등 인권경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고 있음
- '공공조달에서의 인권경영 실태조사(2025)'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달에서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행 제고 방안 모색

○ 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 2035 NDC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생계 및 인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 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의 인권경영 이행 실태를 사업 전 주기로 폭넓게 조사 및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사회 권리 보장 및 정의로운 전환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제도·운영 제고 방안 모색

3. 인권경영 공감대 확산 및 국내외 협력 강화 [사회인권과]

○ 인권경영포럼 등 운영

- 인권경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인권경영의 확산 및 내재화를 도모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 방안과 주요 의제 논의를 위한 인권경영포럼 운영 및 토론회 등 개최

○ 기업과 인권 관련 주요 법제·정책 동향 점검 및 국내외단체 등과 협력

- 기업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에서 의무적인 법제화로 변화하는 인권경영의 흐름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국내외 법제 및 정책 동향 점검 및 개선방안 검토
- 국내외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권경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보고서·서한 등 지속 모니터링하여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 방안과 주요 의제를 논의함으로써 인권경영의 확산 및 내재화 도모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공기업 등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지침 적용 권고(2022), 민간기업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정보공시 제도화 권고(2023) 등 국내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지침 제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개선 권고(2024)로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한 노력
-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북」 배포(2025)를 통해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 제시
- 인권경영 포럼 등 개최 및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매년) 등 인권경영의 확산과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대외 협력 활동 전개

참고**후속과제**

- 민간기업·인권취약산업·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해 인권경영 견인
- 인권경영 법제화 경향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 검토
- 공공분야의 인권경영 고도화 및 정의로운 전환 방안 모색

④ 초고령사회 노인 권리보장 및 돌봄공공성 강화

1. 초고령사회 노인인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인권과]

○ 인권에 기반한 노인 지역사회 계속 거주 돌봄을 위한 제도개선

- 노인이 오래도록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익숙한 집과 마을,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제도와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노인이 장기요양을 받을 권리, 돌봄 및 의료접근권, 돌봄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충분히 향유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권에 기반한 노인 지역사회 계속 거주 돌봄 방안을 모색하고, 재가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인구수 천만 시대에 돌봄 수요가 증가하나, 장기 요양기관에서 노인의 인권상황은 학대와 강박 등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학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
- 노인요양시설로 통칭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상 관련 규정이 미비한바, 노인 돌봄 현장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신체구속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노인 자살위험자 조기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39.9명으로 집계(2022년 기준), 이는 OECD 평균의 약 2.5배에 달하며, 노인의 자살은 전체 자살 사망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사회 노인의 자살에 관한 전반적인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자살고위험 노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한국사회 노인 자살률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노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실태조사

-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과 원인,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사례 및 돌봄 서비스 관련 인권지표 현황을 검토하며, 한국의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마련과 평가지표 개발 필요

2. 노인인권 인식개선 및 협력 강화 [사회인권과]

○ 노인의 권리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 노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및 연령주의(Ageism) 등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이 시혜나 복지정책의 대상이 아닌,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등의 '권리 주체'임을 누구나 공감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 제고 방안 마련

○ 노인인권포럼 운영

- 노인이 노년의 시기에 존엄한 삶을 영위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도록, 노인인권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인권 의제 설정,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등을 위한 포럼 운영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권고(2022)를 통해 돌봄 노동 환경 개선방안 모색
-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2), 학대피해노인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2022), 빈곤으로 인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3),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보호 제도개선 권고(2023) 등 인권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고령자고용법」 상 법정 정년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2024)로 정년연장에 관한 사회적 의제 설정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25)으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촉구
- 노인인권 포럼 운영(매년) 및 노인인권 인식개선 관련 자료 발간 등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외 협력

참고

후속과제

-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건강권,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 노인 자살 고위험자 조기 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노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⑤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인권정책과]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효적 인권교육 방안 검토

- 탈북 과정과 정착 초기단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위험과 남한 사회의 법·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행사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인권교육체계 구축 필요
- 2025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로 추진된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조사사례분석 연구

- 강제실종 및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 논의 과제임
-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축적된 국내외 발간자료를 분석하고, 최근 동향과 실태가 반영된 북한인권 상황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실효적인 개선 방안 마련

○ 북한인권 현안 대응 및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운영

- 북한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권 등 기본적 인권 보호와 구조적 침해 개선을 위해 국내·국제사회의 정책·법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대응
- 제3국 등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 모색
-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강제실종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동향 모니터링 및 법제화 공론화 등 추진(2025. 7. 제정안 의견표명)
-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위원회가 북한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실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운영

2. 북한인권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및 네트워크 조성 [인권정책과]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외부 접근과 독립적 조사가 제한되는 특수성을 지님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인권기구간 협력은 필수적이며 보다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논의의 장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 교류 및 협력

- UN, 국제NGO, 국가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필수적 기반으로 평가됨
- 국제사회의 다양한 인권메커니즘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국제 의제화하고, 피해자 진술과 조사 자료가 국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 기반 강화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국가기관의 탈북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의견표명(2022), 북한선원 강제 송환에 따른 인권침해 정책권고(2023), 북한인권법 시행 7년에 즈음한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 의견표명(2023),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2025), 북한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권고(2025) 등 북한, 북한이탈주민 인권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
- 인권 NAP 권고 등 북한인권 관련 국가정책 분석 연구용역(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2022), 북한이탈주민 위기기구 인권상황 실태조사(2023), 북한내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2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 선택의정서 관련 북한 아동 권리 실태조사(2024),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용역(2025)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지속 실시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매년, 2021~2025)

- (2027~2030) 북한, 북한이탈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검토 지속(북한 이탈주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검토,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 및 강제실종 범죄 처벌 등 관련 법제화 검토, 「6·25 납북자법」, 「국군포로 송환법」 등 개정 관련 의견표명 검토 등)
- (2027~2030)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안정적 개최, 국제기구 및 국내외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인권의 중요성 및 인식 개선

⑥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및 피해자 권리 강화

1.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보호 [인권정책과]

○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2024년 실시한 「재난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재난과 인권 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현안 대응

- 재난·참사 관련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동향, 정책 추진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정책과제 발굴 및 검토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2022),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20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5) 등 재난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검토
-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2) 발표 및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202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4), 산불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5) 등 재난·참사 관련 현안 대응
- 재난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24) 등 재난과 인권 관련 조사·연구 추진

참고 후속과제

- (2027~2030)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검토 지속
- (2027~2030) 재난·참사 발생 시 인권위 대응체계 논의 및 구축

⑦ 수사제도 개편과 인권보호

1. 수사제도 개편의 인권영향 분석 및 대응 [인권정책과]

○ 수사제도 개편 경과 모니터링

- 정부조직법 개정의 후속 조치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운영법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신설, 형법·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경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필요시 의견표명 추진

○ 수사제도 개편의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수사제도 개편이 수사지연, 부실수사 우려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입법의 미비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발굴하여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전략목표 III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존중받는 삶 실현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1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기반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성평등·여성인권 의제 발굴 및 정책 연구2. 성희롱·성차별 예방 및 모니터링3. 성평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CEDAW 이행 모니터링
2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사회참여 증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2. 장애인 인권현안 대응 강화3.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
3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취약아동 인권개선 및 인권환경 조성 방안 마련2. 아동인권 모니터링 및 보고대회3.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모색
4	이주민·난민에 대한 인권보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2.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3. 이주분야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강화
5	군인 등의 인권보호·증진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군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기능 강화2. 방문조사 등 기획조사 활성화내실화를 통한 인권침해 사전예방3. 군인권 현안 적극 점검·대응4. 군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대응 강화5. 군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군인권교육 및 홍보 강화6. 군인권 국내외 협력 활성화
6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인권 실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노동인권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7	인권존중 스포츠 환경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인권존중 스포츠 환경 조성

①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기반 조성

1. 성평등·여성인권 의제 발굴 및 정책 연구 [성차별시정과]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정책권고(안) 검토

- 2025년 수행한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차별해소를 위해 법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관행 등을 검토하고 인권증진 및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 마련

○ 비혼출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양육지원 실태조사

- 비혼출산 인구의 증가와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비혼출산 결정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법제도에 따른 양육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성평등포럼 운영

- 관련 기관, 전문가, 여성단체, 종교계 등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수렴을 통해 성평등 이슈 발굴, 젠더 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
- 여성인권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 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개발 : 구금시설 내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 기준

- 국내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현황 파악
- 구금시설내 성소수자 처우(운동, 종교집회, 출역, 독거수용여부, 목욕 등) 관련 기준 마련

○ 성평등 정책권고 조속 추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태와 실효성 증진방안 연구용역(2023),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실태조사(2024) 결과를 바탕으로 성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2. 성희롱·성차별 예방 및 모니터링 [성차별시정과]

○ <성차별 시정권고 사례집 제12집> 발간

-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2024~2025)> 발간을 통해 위원회의 조사 및 처리 결과(판단기준)를 대외적으로 공유
-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성희롱 교육 및 예방 자료로 활용하고 성희롱 사건의 판단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희롱 예방과 인식 개선에 기여

3. 성평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CEDAW 이행 모니터링 [성차별시정과]

○ 성평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

- 여성인권 및 성평등 관련 국제회의,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성평등 이슈에 대한 국제적 흐름 파악
- 기관 및 단체의 활동 등에 대한 이해 도모, 성평등 의제 협력과 대응 방안 모색

○ CEDAW 제9차 최종견해 후속이행보고서에 대한 독립의견서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9차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2024)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차별금지법 등 6개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권고 관련하여 독립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최종견해 이행 견인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트랜스젠더 인권상황 개선 권고(2021), 형사사법분야 종사자 성인지 감수성 증진 권고(2023),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 권리 보장 권고(2024) 등 성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쟁점목록 의견 제출 (2022) 및 최종견해 이행 도모

참고 후속과제

- 성평등 현안 발굴 및 제도개선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국내 이행 제도화

②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사회참여 증진

1.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장애인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겪는 다양한 유형의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장애인 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2025)' 결과 기반 정책개선 방안 검토 및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실태조사(2026)' 실시

○ 장애인 탈시설 이행 상황 및 지역사회 여건 실태조사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구 위상에 부합하게, 협약 일반논평 5호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이행 모니터링 매커니즘 수립 필요
- 2025년 장애인탈시설 이행 평가지표 개발 후속 조치로써, '지역사회 전환 등 장애인 탈시설 이행 상황 및 지역사회 여건 실태조사(2026)' 추진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후속조치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 실태조사'(2024) 관련 정책 검토
- '정신의료기관 인권친화적 치료 환경 구현을 위한 모델 개발 실태조사'(2025) 관련 정책 검토

2. 장애인 인권현안 대응 강화 [장애인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및 다양한 인권옹호자와의 소통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일(4. 11.)과 장애인의 날(4. 20.) 등 기념 토론회, 장애 인권 관련 단체·기관·전문가 등과의 장애 정책 간담회, 정신장애인 당사자대회 등으로 인권의식 제고, 현안 대응 및 협력 강화

○ 장애인 인권현안 모니터링

- 정신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와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인권 현안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방안 모색
- 체육시설 관련 장애인 접근성, 교정시설 내 장애인 처우, 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의 발달장애인 보호방안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3.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 [장애인차별조사2과]

○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포럼 운영 및 제도 개선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차원의 모니터링 포럼 운영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실태조사(2024)' 결과 활용, 제도 개선

○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협약 관련 국제 이슈 및 동향 분석,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당사국회의 참석
- 국내 단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정신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인권미디어 톡 캠페인(2023~2024)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2024)
- 정신장애인 인권 현안 모니터링(2025)
-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2021, 2023~2025) 및 토론회(2021~2025)
- 장애인 인권현안 모니터링(2021~2025)

참고 후속과제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포럼 운영(2025~계속)
- 정신장애인 인권현안 모니터링(2025~계속)
-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및 토론회 운영(2026~계속)
- 장애인 인권현안 모니터링(2026~계속)

③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강화

1. 취약아동 인권개선 및 인권환경 조성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인권과]

○ 시설보호 아동인권 개선 정책검토

-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상당수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아동의 사생활 자유 침해나 참여권 미흡, 아동에 대한 학대 등의 인권 문제가 지속 제기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마련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인권 보장 정책검토

- 아동의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등 아동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동의 표현의 자유나 정보접근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취약가정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 취약가정(한부모·조손·청소년부모 가정 등)의 아동은 돌봄, 건강 및 발달,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지만 관련 제도의 미흡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
- 취약가정 아동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정책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해외 모범사례를 비교분석 하여 취약가정 아동의 인권 개선 방안 모색

○ 아동·청소년 대상 혐오차별 실태조사

-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혐오·차별 문제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혐오·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문제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방안 모색

○ 취약아동 인권개선 해외선진사례 조사

-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된 아동이 장기적으로 시설형 보호체계에 머무를 경우,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발달단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사회 자립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이 저해된다는 한계가 지속 제기
- 탈시설 정책 관련 해외의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시설보호 아동의 인권증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모범사례 확보

2. 아동인권 모니터링 및 보고대회 [아동청소년인권과]

○ 아동인권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시선에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활동가 등을 통해 현행 정책의 실효성 및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한편, 정책 전문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아동인권 과제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 실시

○ 아동인권 보고대회

- 아동인권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주요한 아동인권 현안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과제 발굴

3.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모색 [아동청소년인권과]

○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대응

- 유관기관 모니터링 및 전문가 협의, 심의관련 쟁점목록 의견서 검토 등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준비
- 인권조약기구 권고사항 이행 점검 및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도모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소년사법제도 개선권고(2021, 2022),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권고(2022), 학생 인권조례 폐지 관련 의견표명(2023),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권고(2025), 인권친화적 학교조성 정책권고(2025), 이주아동 유아학비 제외 개선 권고(2023),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 개선 의견표명(2025) 등 법·제도 개선 권고
- 아동·청소년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연구(2024),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2025), 소년원(2024)·아동보호치료시설(2025) 방문조사 등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점검, 매년 아동인권모니터링 및 보고대회 개최

참고 후속과제

-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대응(2026~)
- 아동인권 모니터링 및 아동인권 보고대회(2026~계속)

④ 이주민·난민에 대한 인권보장

1.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이주인권팀]

○ 이주민·난민 관련 법·정책·제도 모니터링

- 정부의 이주민 정책, 법·제도, 운영 등을 인권기준(이주인권가이드라인)에 따라 점검하고,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 발굴
- 조선업 인력수급 대책에 따라 외국인력 송출·입국 규제가 완화된 이후 이중계약 등 취업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실태 확인 필요

2.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이주인권팀]

○ 이주민·난민 관련 실태조사

-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실태 및 이행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후속조치로 취약 산업분야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3. 이주분야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강화 [이주인권팀]

○ 국제 인권기구 등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인식 제고

- UN 인종차별철폐협약, 국제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GCM), 난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GCR) 등 이주분야 국제규범의 국내이행 상황 점검(모니터링)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 간담회·토론회 개최, 인식개선 콘텐츠 배포 등을 통한 인식 확산

○ 이주·난민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강화

- 정부·지자체·시민사회·이주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한 이주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이주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공동포럼, 간담회 개최 및 해외 선진 이민정책 사례 공유, 교류 추진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2025) 이주민·난민 관련 법·정책·제도 모니터링
 - 출입국관리법개정안(보호기간 상한 마련 등) 분석 및 의견표명(1. 16.)
 - 보호외국인 폭행·의료 미조치 사례 검토 및 의견표명(7. 9)
 - 난민신청자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 문제 검토 및 의견표명(10. 28.)
 - 법무부 운영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정책 모니터링(당사자 22명 심층면담, 12. 2. 결과보고회 개최)
 - 이주구금 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11개국, 12. 17. 결과보고회 개최)
- (2025) 이주민 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7. 1.)
 -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 최종견해 후속이행 간담회(9. 12.)

참고 후속과제

- 조선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모니터링(2026)
-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2026)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마련(2026)

⑤ 군인 등의 인권보호·증진 강화

1. 군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기능 강화 [군인권보호총괄과]

○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개선방안 마련

- 군의 전투력 유지·강화 및 교육 목적 달성을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각 사관학교에 남아 있는 불합리하고 인권 침해적인 제도와 관행 점검 필요
-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2025)' 결과를 바탕으로 사관생도의 인권상황 개선 및 증진 방안 마련

○ 군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대한민국 군 인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그동안 군인에 비해 처우와 복지 측면에서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군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하여 군무원의 인권 증진 방안을 도출

○ 군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법령에서 위임된 병영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정에 대하여 인권적 기준과 기존 권고 사례 등에 비추어 모니터링 실시
-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인권 현안 모니터링 및 진정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

2. 군부대 방문조사 등 기획조사 활성화·내실화를 통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 군부대 방문조사

- 군부대 방문 조사를 통해 외부와 차단된 병영 내 인권 사각지대를 점검 함으로써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개선 등을 통해 인권 수준 향상에 기여

- 조사대상 부대의 인권업무 추진 사항, 권고 이행실태 점검, 군인 등에 대한 면담 조사 등을 통한 인권상황 개선점 파악

○ 군인권 기획조사 강화

- 군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의 중대성과 상당성 고려 직권조사, 군부대 방문조사 대상 발굴
- 개별 진정사건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등 확대 조사

3. 군인권 현안 적극 점검·대응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 군인권 현안·법령 등 모니터링 및 대응

- 군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과제 발굴 및 적극 대응
- 군인권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현황 분석 및 관련 법제 검토, 선진사례분석 등 실시

○ 군 사망사건 조기 개입 등 적정한 대응 체계화

- 사망사건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현장 입회, 관련 기초 사실관계 파악 및 유가족 요구사항 확인 등 지원체계 강화
- 사망원인 관련 인권침해적 배경 여부 파악

4. 군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대응 강화 **[군인권협력지원과]**

○ 군대 내 일·가정 양립 균무환경 및 현황 실태조사

- 군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육아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됨
- 군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강구

○ 군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개선

- 진정조사, 직권조사 등을 통해 군 성차별·성희롱 관련 현안 대응
- 전문가 간담회, 군부대 방문조사 등을 통해 군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군인권상황 개선안 모색

5. 군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군인권교육 및 홍보 강화 [군인권협력지원과]

○ 군인권교육 실효성 제고 및 제도 개선

- 군인권교육 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제도개선 등을 통한 군인권교육 실효성 제고 및 교육환경 조성
- 군인권교육협의회를 통한 각 군의 군인권 교육 환경 점검 및 군인의 인권의식 증진 도모

○ 군인권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

- 군인권 사이버 콘텐츠를 개발하여 장병 등 군인의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군인권 교육의 실질적·효과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육 콘텐츠 개발

○ 군인권교육과정 운영

- 군인권강사, 군인권교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 전문성 확보
- 각 군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군인권교육 운영 및 대상별 맞춤형 인권 교육과정 운영

○ 군인권 홍보 강화

-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를 통해 권리구제 기관으로서의 인지도 제고,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추진
- 군대 내 성희롱·성차별 예방 캠페인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6. 군인권 국내외 협력 활성화 [군인권협력지원과]

○ 군인권 국내 협력 강화

- 군인권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와 교류 협력으로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현장성 제고
- 군인권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협력 강화

○ 군인권 국외 협력 활성화

- 군인권 국제회의 참가 및 해외 군음부즈만 기구와의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위원회 역량 강화 및 군인권 분야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 해외 군인권 동향 및 현안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사회의 군인권 관련 논의 흐름 파악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2022. 7. 1. 군인권보호관제도 시행, 군부대 방문조사, 군인등 사망사건 수사 입회 등의 규정 신설
- 격오지부대, 다문화 장병 등 22개 주제별로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권 침해 사전 예방 및 인권상황 개선 권고(2022~2025)
- 군사망 입회업무를 통한 군 사망사건 조사·수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 사망입회 현황('22.7.1.~'25.11.25.): 사망통보 450건, 입회 186건
- 군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정책권고
 - * 정책권고 등 현황('22.7.1.~'25.11.25.): 의견표명(의견제출 포함) 11건, 정책권고 21건
-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 강화를 통한 권리구제(2022~2025)
 - * 군대 내 가혹행위, 군의 부실의료에 의한 사망사건 등 6건 직권조사
- '군인권보호관 출범 1년 진단과 과제 토론회 개최(2023)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 5년, 대체 복무제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2023)
- 군 성차별·성희롱 현황과 개선 토론회 개최(2023)
-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2024)
- 여군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2024)
- 군인권교육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배포(2024~2025)
- 군인권보호관제 시행 3년 성과 점검 및 결과 보고(2025)
- 군인등의 사망사건 대응 매뉴얼

참고**후속과제**

- 군인권 법령·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 군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2026~2027)
- 군대 내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및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2026~2027)

⑥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인권 실현

1. 노동인권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사회인권과]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현행 법제도는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해당 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기본적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AI가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

- 노동현장에 도입된 AI로 인하여,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긍정적 측면과는 별개로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 위협, AI에 의한 채용·배치·평가·징계·해고, AI 기반 CCTV 노동감시, PDA 등을 활용한 생산성 추적, 노동자의 생체 정보 수집 등 새로운 영역에서 노동인권 침해의 소지가 커지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AI가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AI와 노동인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및 현안 대응

- 현행 법령상의 한계로 인하여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돌봄노동(가사근로자, 간병인 등), 택배·배달노동 등 노동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노동 관련 법령 제·개정,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의 변경은 노동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사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모니터링 및 돌봄노동·배달 노동·새벽 배송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한 적극 대응, 요양보호사 장기 근속기간 산정 시 기관간 연속성 불인정 및 노조 전임 기간 근속기간 미인정 등 불합리 개선과 같은, 법령 및 정부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권고 및 의견표명 등 추진

- 「옥외 등 현장 종사 노동자의 휴게·위생권 보장상황 실태조사」 등 노동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노동인권 취약계층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검토 방안 마련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21),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2023) 등 특별히 취약한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과 건강권, 안전권 등에 증진 노력
-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2022)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22),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3) 등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 과정에 적극적 의견 제시

참고 후속과제

-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 모색
- 기술 발전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인권 보장 방안 마련

⑦ 인권존중 스포츠 환경 조성

1. 인권존중 스포츠 환경 조성 [인권정책과]

○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스포츠 교육환경 조성 등)

- 학교 운동부 등 스포츠 교육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및 지도자에 의한 직접적인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
- 학교 운동부의 운영체계,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학생선수가 운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주요 체육 경기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

- 전국 규모의 종목별 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종합체육 대회 등 주요 경기대회 현장에서의 인권상황 모니터링 실시
- 참석 선수, 지도자, 관계자 등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실사 조사 등을 통해 경기대회에서의 인권 보장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여,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친화적 경기대회 문화 정착을 도모

○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차별·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기관·지자체·학교·민간단체 등 관련 주체 간 체계적 협력 구조(스포츠 인권협의회) 운영

○ 스포츠 인권 관련 권고 이행점검

- 직장운동경기부, 초·중·고 학생선수, 여성체육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며, 권고의 이행이 지속 가능하도록 권고의 실효성 확대

○ 학교 밖 유소년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스포츠클럽 등 학교 밖 유소년 선수에 대한 인권보호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바, 관련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2010~2023)
 - 기간 380건 접수 355건 처리(권고41건, 고발 1건, 의견표명 4건 등)
 -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전수조사 등 15종의 실태조사
 -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 권고 및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권고, 스포츠 인권 현장 및 가이드라인 개정 권고, 의견표명 등 11건
 - 권고이행점검 직장운동경기부 정책권고 등 5건 123개 기관
 - 2019년~ 2022년 주요 경기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 실시
 - 스포츠인권선서캠페인, 인권교육용 동영상 제작, 인권캠프운영(선수, 지도자 등)
- 주요 경기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 권고이행점검 등 진행(2024~2025)

참고 후속과제

- (2027~2030) 스포츠계 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검토
- (2027~2030) 스포츠분야 관계기관 협력체계 운영 및 현장점검 등 지속 추진

전략목표 IV

인권보장체계 구축 및 인권 거버넌스 강화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및 국제적 협력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국제인권제도 대응 강화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제고GANHRI 및 국제인권기구 교류·협력국제인권 현안 대응
2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인권의 지역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지역 교류협력 및 홍보 활동지역 인권교육 활동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3	인권위 책임성·독립성 강화 및 역량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교육 내실화를 통한 구성원 전문역량 강화위원회 국제인권 역량 강화
4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및 조정 활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진정사건 처리의 신속성 제고 및 적극적인 현안 대응조사역량 강화 활동조사절차의 개선 및 정비 등기획조사 강화효과적인 군인권업무 지원체계 구축조정제도 운영 활성화
5	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권고 이행 체계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인권 NAP 수립·이행 관련 모니터링 및 권고국가인권통계 생산·관리 및 인권상황 분석권고·의견표명 이행실태 확인·점검 강화
6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가치 확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인권교육 제도 개선 및 기반 확대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 기반 조성인권교육 연구 및 콘텐츠 강화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보급인권교육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인권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언론 홍보 강화
7	다양한 인권옹호자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인권·시민사회단체 교류협력 강화인권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통한 인권가치 확산

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및 국제적 협력 강화

1. 국제인권제도 대응 강화 [국제인권과]

○ 유엔 인권이사회 모니터링 및 대응

-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증진, 인권침해 검토 및 권고 등 유엔 체계 내 인권의 주류화와 효율적인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중 총 10주(3회기)간 정기회기 개최
- 매 정기회의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인권의제, 제출된 주요 보고서(특별 보고관 등) 및 채택된 주요 결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원회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최신 인권 동향 제공

○ 국제 인권조약기구 모니터링

- 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에 기반하여 국내 인권정책을 제안하고 조사구제 업무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조약기구 활동의 최신 동향을 정확히 파악·활용하여 위원회 업무의 국제적 정합성과 전문성 증대 필요
- 인권조약기구의 회기별 심의, 개인진정 결정례, 일반논평, 성명 등 주요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책·조사·국제 협력 기능 강화 도모

○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개방형 정부간 실무그룹 활동 참여

-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개방형 정부간 실무그룹 설립(OEIGWG)'를 설립하는 결의가 통과됨(2025. 4. 3., 결의 78/13)
- 2026년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실질적으로 노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국제적 작업을 진행할 OEIGWG에 적극 참여하여, 노인권리협약의 성안에 기여하고, 국제 논의를 모니터링하며 국가인권기구를 선도하고 관련 논의를 국내에 소개하는 등 적극적 역할 수행

2.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제고 [국제인권과]

○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체계 구축 촉진

- 유엔인권제도 참여 및 국내 이행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국가이행 체계(NMIRF, National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국회, 법원, 시민사회 등 다수의 이해 관계자와 협력 강화
- 유엔인권기구의 권고가 중앙정부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지방정부에 의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참여 독려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 촉진 활동

- 한국은 9개의 주요 인권조약과 9개의 선택의정서 중 8개의 주요 인권 조약과 5개의 선택의정서만을 가입·비준하였음
 - 우리나라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비준 촉진 필요
- ※ 미가입 조약(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미가입 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확산

- 유엔 인권기구(총회·제3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유엔조약기구, 국가 인권기구 관련 자료와 지역 인권규범(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등) 등에 대한 학계, 시민 사회, 대중의 인식 제고 및 국내 이행 촉진을 위해 국제인권 규범 자료의 번역 및 배포 추진

○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운영 및 내실화

-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탑재 콘텐츠 내실화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접근성 보장

○ 인권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평가와 개선 방향 연구

- 유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SGDs)”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는 유엔에 이행상황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있음(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2027년 제출 예정인 한국의 VNR 및 2030년까지의 이행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인권과제에 대한 연구

3. **GANHRI 및 국제인권기구 교류·협력 [국제인권과]**

○ **GANHRI 활동 참여를 통한 국제 역량 강화 및 인권 논의 확산 도모**

- GANHRI 관련 회의(총회, 지식교환회의, 연례콘퍼런스 등)에 참가하여, 안전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회원기구의 역할 수행, 승인소위 대응
- GANHRI 주요 인권논의 참여 또는 관련 자료 배포 등을 통한 우리 위원회 국제 역량 강화 및 국내 선진 인권 논의 확산 도모
- 국가인권기구 및 유엔기구,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

○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운영 및 노인인권 의제 선도**

-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기구로서, GANHRI 내 노인 인권 의제에 대한 공론화 및 유엔 인권체계(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노인인권독립 전문가 등) 내 활동 선도
-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연 2회) 및 국제기구 내 노인 인권 인식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회의 개최

○ **APF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 증진**

- APF와의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여 국제 인권보장체계와 국내 인권보장 체계의 가교역할 강화
- APF 연례회의·거버넌스위원회 회의 참석 및 인권 현안 대응 강화, APF 거버넌스 위원으로 지역 간 네트워크 회의에서 국제사회 인권논의 주도

○ APF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 APF 소속 국가인권기구 직원 대상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제공 및 국제사회 인권 대응 역량 신장에 기여

4. 국제인권 현안 대응 [국제인권파]

○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나 전문가그룹 등 위원회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구체적 해결책 제시
- 아태지역 인권증진 및 개선을 위해 APF 회원기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유엔인권기구, 유럽연합, 국내외 인권단체, 주한 외교공관, 인권 전문가나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 마련

○ 국제인권동향 및 온라인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 국제기구의 주요 인권 소식 및 행사를 국내에 소개하는 국제인권동향 제작 및 위원회 전 직원에 배포함으로써 직원의 국제역량 강화 도모
- 위원회 주요 행사 및 권고를 영문 번역하여 온라인 영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고 정책고객(2,500여 명의 국제인권단체, 연구소 등)에 발송함으로써 위원회의 대외 인지도 제고

○ 수시 국제교류협력 강화

- 위원회를 찾는 해외 국가기관, 시민사회단체, 학생 등을 상대로 위원회 업무를 소개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인지도 제고
- 몽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업무협약(2025. 6. ~ 2028. 6.) 내용을 기반으로 한 협력 사업 진행을 통한 동북아시아 인권기구 간 파트너십 강화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유엔인권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 및 UPR 심사에 대응하여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 독립보고서 제출 및 심의 참가, 성명 등 발표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간담회(2021, 2024), 아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 간담회(2021, 2025), 유엔인권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 이행 간담회(2022), 헌법 재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토론회(2022),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 쟁점 간담회(2023),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이행 체계화 방안 모색 토론회(2024) 등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촉구를 위한 노력
- 간리 고령화실무그룹 의장으로서 간리 노인인권지침서 의결을 주도(2024)하고, 노인권리협약 성안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58/13)에 기여(2025)
- APF 의장국 수임(2022~2024)하여 국제인권 의제 논의를 선도하고, APF 국가 인권기구 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제인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구축(2024~)하여 국제인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함으로써 국제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참고 후속과제

- 유엔인권규범 국내 이행의 체계화 권고 이후 정부의 이행 과정 지원(국정과제, 2026~)
-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촉구를 위한 인식 전환 및 여론 조성

②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인권의 지역화

1.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홍보협력과]

○ 지역인권보장체계 안정화 구축

- 지자체 인권행정 역량강화 지원 및 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등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 광역지자체 인권행정 평가 보완

○ 실효적인 지역인권증진을 위한 체계 구축

- 인권현안 및 지역인권증진을 위한 사무처와 인권사무소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 지역 내 대학인권센터 네트워크 강화 (강원인권사무소)

- 대학인권센터의 안정적 정착 및 역량 강화 지원
- 대학인권센터협의회 개최 등 대학인권센터와의 소통·협력 강화 및 대학 내 인권 문화 확산

○ 공공기관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강원인권사무소)

- 인권경영협의회 등 공공기관과의 상시적 소통을 통한 협력 사업 발굴·인권경영 문화 조성 지원
- 기업과 인권 현황점검 및 인권경영 확산 과제 모색

○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 활동 강화 (대전인권사무소)

- 장애인인권영화제, 토론회 등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2. 지역 교류협력 및 홍보 활동 [인권사무소]

○ 인권기구(지역 권리보호기관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 인권사무소와 주요 유관기관·단체간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인권증진을 위하여 유의미한 분야·주제에 대한 공동협력 추진
- 지역 인권 현안에 대한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으로 협력기반 강화

○ 지역 기반 인권 홍보활동 강화

- 지역 주민들이 인권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한 지역 내 인권 관련 유관기관·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협력채널 확보, 인권에 대한 지역민 관심 유도 등 인권문화 확산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뉴미디어 인권홍보 방안 검토
- 지역주민이 인권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3. 지역 인권교육 활동 [인권사무소]

○ 분야별, 대상별 인권교육 확대 및 강화

- 학교관리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인권리더십 과정, 대학 인권센터, 공공기관 대상 인권직무과정 등 운영
- 지역단위 대상별 인권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 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를 비롯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 의식 확산 도모

○ 인권교육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역량 제고

- 다양해지는 분야별, 대상별 인권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인권강사 양성 및 지역 내 인권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4.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인권사무소]

○ 지역인권기구 협의체 등 지역인권 거버넌스 강화

- 지역 내 업무 유관기관과 인권 현안 문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강화
- 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 지역인권기구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인권현안 공유 및 신속 대응, 공동협력사업 추진
- 인권조례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협력 및 지자체 인권위원회 기능 강화 지원
- 전국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협력 및 지자체 인권보호관 역량 강화 지원
- 광역지자체 인권행정 평가 제도 설계 및 시범 운영
- 충남 인권기본조례 폐지 심사 관련 의견표명
- 지역인권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참고 후속과제

-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및 전국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소통·협력
- 광역지자체 인권행정 평가 제도 보완
-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관련 인권의제 발굴

③ 인권위 책임성·독립성 강화 및 역량 제고

1. 교육 내실화를 통한 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운영지원과, 인권교육운영과]

○ 교육 내실화를 통한 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운영지원과)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신규직원 교육 내실화, 인권옹호자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함양,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법정의무교육 실시, 교육 사전·사후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 신규 인권위원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화(국제인권메커니즘 등)

○ 직원 역량강화 교육 (인권교육운영과)

- 인권조사관 학교 및 인권정책학교 등 인권전문학교 운영을 통해 인권옹호자로서 직원 직무 역량 제고

2. 위원회 국제인권 역량 강화 [국제인권과]

○ 위원회 국제인권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 국제인권정책, 국제협력, 국제홍보 유관부서 간 정보 교류 및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 강화

○ 위원회 국제인권 업무 전문적 지원

- 위원회 주요 업무 전반에 국제인권 기준 및 네트워크 활용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인권 주류화 촉진
- 국제인권제도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국제적 대응력 제고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국제업무 추진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2024), 조약기구 심의 담당부서 실무 간담회(2023~), 국제인권 부서전문교육 확대 실시(연 5회, 2023~) 및 국제 인권업무 상시 지원
-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구축(2024~)하여 국제인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함으로써 국제인권 역량 제고
- 인권옹호자 역할 및 책무 강화 교육(2023, 2025)

참고 후속과제

- 국제인권 전문성과 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함께 갖춘 국제인권 전문 인력 필요
-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고도화 필요

④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및 조정 활성화

1. 진정사건 처리의 신속성 제고 및 적극적인 현안 대응 [조사부서]

○ 진정사건 권리구제 강화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수시 점검·관리
- 직권조사 및 긴급구제 요청사건 등 현안 사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시의성 있는 대응
-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조사, 사회 현안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관 지정 및 조사팀 구성을 통한 대응
- 장기사건 및 특이사건의 효과적 관리·점검

2. 조사역량 강화 활동 [조사부서]

○ 각 조사부서 소관 사건 관련 조사관 전문성 강화

- 조사기법 및 진정 관련 위원회 판단기준 등의 논의 및 교육을 통하여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관 전문성 강화
- 조사관 토론회, 조사관대상 교육 등 실시

○ 시각장애인 등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문체계 운영 등 추진 (장애인차별조사1과)

- 자문체계 운영 및 일기 쉬운 결정례 등 제작으로 시각장애인·발달장애인 등 정보접근성 제고하고, 제작한 자료를 배포하여 진정 접근성 강화

○ 팀간 교류활성화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광주인권사무소)

- 상담 및 조사과정 중 경험할 수 있는 상담 및 조사관의 마음 치유 과정을 통한 심리적, 신체적 소진 예방
- 인권사무소 내 팀 간 교류를 통한 조사관 업무능력 향상

3. 조사절차의 개선 및 정비 등 [조사부서]

○ 조사·구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사절차 개선 정비 (조사총괄과)

- 조사환경 변화 등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e-진정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보완 등 조사인력 부족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업무 지원방안 검토
- 수시로 변화되는 조사 업무 관련 법령·규정 개정 사항 등 조사관 공유 및 교육 강화

○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 매뉴얼 마련 (아동청소년인권과)

-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25)'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관련 매뉴얼 마련

○ 성희롱 조사 절차 및 판단기준 모니터링 (성차별시정과)

- 성희롱 사건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조사방법, 가·피해자 분리 기준,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및 관계인의 조사 방법, 2차 피해 등 성희롱 조사 및 구제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판단기준 등 마련

4. 기획조사 강화 [조사부서]

○ 각 조사부서 소관 방문조사 강화

- 경찰청 광역유치장, 교정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분류심사 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 방문조사를 통해 구금보호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파악하고 취약점 개선 필요

○ 유치인 인권보장 실무 관련 해외 선진모범사례 벤치마킹 (조사총괄과)

- 국내 유치인 입감 절차 및 유치 환경 개선을 위한 해외 선진모범사례 벤치마킹 필요
- 해외 선진모범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더 나은 유치인 인권 보장을 위한 국내 법률 및 실무를 비교분석하여 인권침해 요소 취약점 개선 도출

5. 효과적인 군인권업무 지원체계 구축 [군인권보호총괄과]

○ 군인권 담당조사관 역량 강화

- 군인권 특수성과 복합적 인권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군인권 업무에 특화된 조사기법, 법·제도 이해 등을 실시함으로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 정책·조사 품질의 제고와 군인권 침해 예방 기능의 실효성 확보

○ 조사관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군 사망사건 현장에 입회한 조사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공상 사전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실시

6. 조정제도 운영 활성화 [인권상담조정센터]

○ 조정제도 활성화

- e-진정시스템 진정 접수 통지문에 조정제도 안내문 추가 등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 기여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업무 혁신을 위한 ‘조사업무 효율화 실무단(TF)’을 구성하여 진정사건 장기화 해소 및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장·단기적 접근 방안 및 단계별·대상별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
-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조사기법 연구
- 경찰, 검찰, 법원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결정요지를 정리한 자료집을 만들어 진정사건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시 활용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매뉴얼 제작
- 사건처리지연 통지기한 조항 신설을 위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
- 소위(상임위)의 수정의결 사항을 반영한 보고서를 e-진정시스템에 공식문서형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e-진정시스템에 ‘소위(전원위)회의결과 반영 문서’ 탭을 신설 등
-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2022)

참고**후속과제**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여부 검토
- 조사업무 지원 및 조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e-진정시스템 기능 개선
- 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및 조정 사건 발굴 확대'

⑤ 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권고 이행 체계 강화

1. 인권 NAP 수립·이행 관련 모니터링 및 권고 [인권정책과]

○ 제4차 인권NAP 이행 평가 및 제5차 인권NAP 권고(안) 준비

- 2028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인권NAP 수립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5차 인권NAP 권고안 준비 시작 필요
-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4차 인권NAP 이행 평가 및 제5차 인권NAP 권고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간담회 추진

2. 국가인권통계 생산·관리 및 인권상황 분석 [인권정책과]

○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 국내 인권상황의 시계열적 변화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하여 국내 인권상황의 변화 추이 파악 필요
-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인권의식실태조사 실시, 국가인권통계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국가인권통계를 토대로 정책 수립·평가에 활용 가능한 국가인권지표 후보군을 도출하고, 국가인권지표의 단계적 개발 방안 마련

3. 권고·의견표명 이행실태 확인·점검 강화 [정책부서, 조사부서]

○ 각 정책·조사부서 소관 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

○ 정책권고·의견표명 이행실태 점검 및 보고 (인권정책과)

- 정책·조사부서의 정책권고·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취합 및 분석, 전원위원회 보고

※ 2024. 7.~2025. 6. 기간 권고·의견표명한 사안을 중심으로 점검 예정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수립 권고(2022. 7.), 제3차 인권NAP 이행 상황 모니터링(2023), 제4차 인권NAP(2023~2027) 평가 토론회(2024), 제4차 인권NAP(2023~2027) 권고 수용 여부 보고(2025), 제4차 인권NAP 이행 상황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간담회(2025) 등 인권NAP가 적절히 수립되도록 권고하고 이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인권NAP의 효과성 제고
- 매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생산함으로써(2019~2025) 국내 인권상황의 시계열적 변화를 체계적·객관적으로 파악
- 2024년 권고 등 이행실태 확인·점검 시범운영 및 결과 보고(2024), 2025년 권고 등 이행실태 확인·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2025) 등을 통해 위원회 권고등의 실효성 제고 모색

참고 후속과제

- (2027) 제5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안 마련, 정부의 인권NAP 수립·이행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2027~2030) 인권의식실태조사 실시 및 국가인권통계 생산
- (2027~2030) 인권통계시스템 구축 및 국가인권지표 개발
- (2027~2030) 권고 등 이행실태 확인·점검 지속 실시

⑥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가치 확산

1. 인권교육 제도 개선 및 기반 확대 [인권교육기획과]

○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추진

- 국가인권교육원 사무실 이전, 개원을 위한 각종 물품 구매, 홍보 및 개원식 개최 등의 개원 준비 업무 추진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교육원 조직·인력 확보 관련 대응

○ 국가인권교육원 청사 관리

- 국가인권교육원 건축 공사 준공 이후 보강 공사 및 개원 이후 시설, 보안, 미화 등 청사 관리의 원활한 수행
- 2027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제출(기숙사 신축 관련)

○ 사법부 공무원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 사법부 공무원의 인권 의식과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 등 조사 연구
-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사법 행정 제도화에 따른 법관, 법원공무원, 재판 연구원(관) 등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의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돌봄(아동·노인)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 기반 마련

- '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 항목에 인권교육 항목 도입을 위한 현황 파악 및 기초조사 실시
- 노년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고령친화 도시'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인인권 인식 등 기초조사

○ 초등학교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가치 확산

- 학교 교육과정, 학교 운영, 교사 연수, 학생 활동 등 학교의 모든 영역에 인권교육이 지속적·체계적으로 포함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교과용 인권도서, 수업지도안(교수·학습자료) 보급·배포 및 교사대상 활용 방법 연수 실시 등 추진

○ 대학인권센터 운영 기준 표준모델 기초 연구

- 2026년은 대학인권센터 제도 시행 5년 차로 대학인권센터별 운영 현황 점검하고, 각 대학인권센터 운영규정을 수집, 분석하여 규모별, 학교 특성별 관련 규정 등 조사를 통해 대학인권센터 운영규정 표준 모델 개발

2.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인권교육운영과]**

○ 인권리더십 과정 운영

- 인권에 대한 관리자 차원의 관심과 의지를 높임으로써 인권 친화적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견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 리더십 함양 교육
 - 지방의회 의원 및 지자체 인권위원 리더십 강화
 - 인권 친화적 학교 운영을 위한 초·중·고 관리자 리더십 강화
 - 사회복지분야 시설장 및 관리자 등 대상 인권 리더십 강화

○ 인권직무역량 과정 운영

- 인권 친화적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직무 특성을 반영한 인권 실천 중심의 실무자 대상 인권 역량 강화 교육
 - 국가공무원(경찰 등 법집행 담당) 및 지방공무원(인권담당) 인권역량 강화
 - 특별사법경찰 인권역량 강화
 - 이주 관련 업무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 대학인권센터 업무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 인권교육가(돌봄·아동·노인·장애인·스포츠 분야 등) 역량 강화
 - 기업과 인권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 피진정인 대상 특별인권교육

○ 인권감수성 과정 운영

- 우리 사회 전반의 보편적 인권 문화 확산 및 일상 속 인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무원·시민 등 일반인 대상 교육
 - 공무원(국가직·지방직)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 시민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 국가인권교육원 방문·특강 프로그램 운영

- 인권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국가인권 교육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교육원 내 전시·체험·공연 시설을 활용하여 방문·특강 등 프로그램 운영

3.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 기반 조성 [인권교육운영과]

○ 인권강사 신규 양성

- 지역사회와 기관에서 확대될 인권교육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인권교육원 개원에 앞서 인권강사 양성과 위촉 제도의 적정성 및 현 양성과정 운영 방식의 조정 가능성 등을 포함한 개선안 검토

○ 인권강사 활용 및 역량 제고

- 인권 패러다임과 인권이슈에 대한 인권 강사의 이해 제고 및 인권강사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실질적인 전문성 강화
- 인권강사 재위촉 이수 관리, 역량강화 과정 운영 등 개선안 검토

4. 인권교육 연구 및 콘텐츠 강화 [인권교육기획과]

○ 중·고등학교 인권경영 교육 활성화

- 청소년이 미래의 경제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 인권의식을 기반으로 한 인권경영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권경영 선언 확산에 대응하고, 이해·평가할 수 있는 역량 함양 필요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인권 등 시민참여형 인권경영 교육 활성화 실시

○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인권의 가치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의성·활용성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인권교육 전문성, 대중성 강화

-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활용 콘텐츠, AI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아동·노인 인권교육 콘텐츠 등 5종 개발
- 2026년 상반기 개원하는 국가인권교육원의 인권교육 과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간 개발해 온 교육과정 운영 모듈 135종에 대한 교육과정 실제 적용 및 보완 추진
- 분야·이슈별로 미비된 교육모듈의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5.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보급 [인권교육기획과]

○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보급을 통한 인권의식 확산

- 현안을 반영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기존 콘텐츠 품질 관리를 통한 사이버 인권교육 활성화
- 일반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연중 운영하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확산 도모
- 교재, 자막, 수어영상 등 보조 서비스 제공 강화로 학습 만족도 제고

○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체계 품질 향상

- 교육원 개원 후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이버 운영 시스템 개선
- 콘텐츠 공동활용 확산을 통한 사이버교육 활용성 증대와 교육 활성화

6. 인권교육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인권교육기획과]

○ 한국인권교육포럼 개최

-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 과제와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인권교육 제도 및 정책에 반영
- 위원회와 인권교육연구자, 인권교육활동가 및 교육청·지자체 등의 인권교육 담당자 간 소통 및 협력의 장 마련

○ 대학인권센터와의 협력 강화

- 대학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과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인권센터 워크숍을 개최하고, 논의 내용을 조사관 역량강화 과정, 인권역량강화 과정 및 지역별 대학인권센터 협의회에 반영

○ 학교 분야 및 아동·노인 인권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 학교인권협의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인권교육협의회 개최 등 인권 교육 제도개선 및 인권교육과정 운영 관련 현장 의견수렴 통로 확보 및 활성화를 통한 제도개선 수용성 및 인권교육 만족도 제고
- 노인 인권 보장 및 노인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인권 교육 네트워크 운영

○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이행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기술 관련 인권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25~2029)' 이행 모니터링
- 초·중·고 교육과정 중 5차 이행의 주요 내용인 인권과 디지털 기술, 환경과 기후 위기, 성평등 관련 교육 현황 파악 및 관계기관 협의

○ 국외 인권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 국제 인권교육 기관 등과의 일상적 정보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제 사회의 인권교육 흐름 파악
- 국제 인권교육 사례 발굴 및 인권교육 국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 교육 기관 방문

7. 인권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 [홍보협력과]

○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홍보 및 캠페인

- 인권 정책의제 발굴, 관계기관,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 및 연계를 통해 변화하는 인권의제에 대해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인권정책 홍보 추진

○ 장애 접근권 향상을 위한 베리어프리 버전 제작

- 화면해설 음성과 자막 그리고 수어영상 등의 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이 인권문화콘텐츠를 어려움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제작·보급
- 폐쇄 자막 처리만 되어 있는 기제작 인권영화, 기타 위원회 제작 영상물 또는 인권 문화 예술극 중 베리어프리 버전으로의 작업이 가능한 분야를 검토 후 제작·보급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생활 접근성 향상 도모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권홍보 활성화

- 위원회 보도자료 및 주요 결정례, 정책·정보 등을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매체와, 인권잡지 및 웹진, 뉴스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
- 활발한 뉴미디어 운영을 위해 별별기자단 운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 참여 독려 이벤트 추진 등으로 위원회 및 인권정책 홍보

○ 인권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인권공모전

- 인권공모전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인권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메시지 전파
- 공모전 분야 확장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각과 방식의 창작물을 발굴하고 콘텐츠 다양성을 제고

8.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언론 홍보 강화 [홍보협력과]

○ 언론홍보 내실화를 통한 인권의식 증진

- 위원회 주요 권고 및 활동 등을 언론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이해도 및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인권보도 확산을 통한 대국민 인권의식 증진 및 인권보도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언론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국가인권교육원 설립공사(건축/전기/통신/소방) 본공사 완료
-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추진
- 교원 양성기관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제도개선 권고
-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실시
- 대학인권센터 전문성 및 역할 강화 지원
- 돌봄(노인) 인권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제도개선 검토
- 제26차, 제27차 한국인권교육포럼 개최
-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교육기관 인권교육 운영 실태조사 후속 검토
- 교대·사범대 등 교원 양성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안내서 활용 설명회
- 학교 자율시간 기반 인권 교과서 활용 교수학습 모델 개발
- 초등학교 인권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개발
- 제5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25~2029) 번역 및 보급
- 학교 자율시간 기반 인권 교과서 활용 교수학습 모델 개발
- 돌봄(아동) 권리 이행 모니터링
- 인권교육 프로그램(콘텐츠) 개발(7종), 보급·활용(4종)
- 국내외 인권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 인권교육원 개원 대비 교육 프로그램 기반 마련
-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 기반 조성
-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보급
- 인권영화 <힘을 낼 시간>, <차가운 것이 좋아> 제작 및 전주국제영화제 수상 등, 인권영화 배리어프리 버전 제작 및 지역 상영회 개최
-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보급(CBS <세바시>, 라디오 캠페인, EBS 클래스 e <인권 사색>, 인권영화도서 <총총꽃꽃>, 인권만화 <호시탐탐>, 세계인권선언 필사책 등)
- 인권보도상 시상 및 언론 기획보도 추진
- 뉴미디어(블로그,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 운영, 인권공모전 모집 및 시상

참고 후속과제

-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추진(사무실 이전, 개원식 개최, 홍보 등)
-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제도개선 검토
- 돌봄(노인) 인권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제도개선 검토
- 제5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이행 및 중간 점검
- 초등학교 인권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보급
- 국가인권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 신규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 기반 조성
- 초등학교 인권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보급
- 인권교육(사이버) 콘텐츠 개발·보급
- 다양한 매체별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⑦ 다양한 인권옹호자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1. 인권·시민사회단체 교류협력 강화 [홍보협력과]

○ 인권옹호자회의를 통한 교류·협력 강화

- 각 지역에서 인권옹호 활동을 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등과 인권현안 공유 및 위원회와의 협력 기반 강화
-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인권사무소와의 유기적 협력 추진

○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내실화

- 시민사회단체의 인권보호·증진 활동 지원을 통한 민간영역의 인권옹호 역량 강화 및 인권문화 저변 확대
-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권옹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인권시민사회단체 소통·협력 강화

-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 위원장 등의 인권현장 방문 추진으로 신속한 현안 대응 및 협력 강화
- 위원회 교류협력 주요 부서 및 인권사무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 시민사회단체 교류협력 내실화

2. 인권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통한 인권가치 확산 [홍보협력과, 인권사무소]

○ 인권의 날 기념행사 개최

- 대한민국 인권상을 대통령 훈·포장 및 국가인권위원장 표창으로 수여, 각 분야에서 인권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 노력 확산

-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를 통해 인권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교류 협력 증진
- 인권사무소가 주관하고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획·운영 하며, 지역민들이 '세계인권선언의 날'의 의미를 지역 현안과 연결하여 되새길 수 있도록 지역 현안을 행사에 접목하여 기획

참고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주요 실적

-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보조금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의2)
- 인권현장 방문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요청사항 지원
- 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

참고 후속과제

- 인권시민사회단체 일상적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수도권 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 강화

주요 일반과제 사업

◇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상시적·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중 주요 과제

□ 위원회 업무 기획 및 총괄 [기획재정담당관]

- 위원회의 중장기적 목표와 활동 방향이 인권환경 및 위원회 여건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증진행동전략 관리
- 인권증진행동전략을 구체화한 업무계획 수립,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다각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모색 함으로써 위원회 성과 제고에 기여

□ 위원회 법령의 시의적절한 정비 [행정법무담당관]

-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검토 및 국정과제 선정에 따른 입법추진 현황 점검 등 국정과제 법령 관리

□ 기록물 관리 지도·감독 및 평가 대응 [행정법무담당관]

- 처리과에서 생산·접수되는 기록물의 등록, 분류, 편철 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 도모
-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서의 적극적 평가 대응으로 책임성 강화

□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선 [정보화관리팀]

- 행정업무포털(extra) 구축을 통해 직원 업무환경 개선 및 노후화된 업무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 편의성 및 효율 강화

□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 향상 **[운영지원과]**

- 다양한 직원 참여·소통 프로그램 운영, 직원 복지 향상 등을 통한 활력 있는 직장문화 조성

□ 위원회 의사업무의 안정적 운영 **[운영지원과]**

- 의사운영 제도 정비, 의사운영지원시스템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사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인권위원회의 업무 적응 향상을 위한 지원

□ 진정권 보호를 위한 구금보호시설의 진정함 운영 내실화 **[인권상담 조정센터, 인권사무소]**

- 구금보호시설의 보다 체계적인 진정함 관리를 위한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
-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의 진정함 관리 실태 점검 실시

□ 인권도서관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 **[인권교육기획과]**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인권정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위 간행물 발간 현황 관리와 정보 제공
- 인권도서관 정보서비스 운영, 자료 대출서비스 제공, 인권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인권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제공